별첨 2

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-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영 제21조제8항제3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"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 - 1.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(투자일임업을 제외하다)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
 - 2.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(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하며,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을 포함한다. 이하이 항 및 제4-7조의3에서 "금융기관등"이라한다)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
 - 3.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가. 다른 금융기관등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는 자나.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자
 - 4.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등(임직원을 포함한다)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. 다만,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금융기관등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나. 그 밖에 경미한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5.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등이 판매하 는 금융투자상품에 한정하여 자문하지 않을 것. 다만, 특정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수수료, 보수 등의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6. 그 밖에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

제4-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(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· 투자증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 · 투자증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 · 투자증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. 이하 "자산운용회사"라 한다)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

제4-6조제1항제1호나목 중 "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중권에 대한 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"를 "자산운용회사"로 한다.

제4-6조제6항제3호 중 "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"를 "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-7조에서 같다"로 한다.

제4-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-7조의3(투자자문업자의 설명의무) 영 제53조제1항5호바목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투자자문업자가 다른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겸영하는 금융업
- 2. 임직원이 다른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을 겸직 중이거나,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일 경우 그 사실

- 3. 다른 금융기관등의 계열회사인 경우 그 사실
- 4. 전체 투자자문 내역 중 특정한 금융기관등이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비중이 30%를 초과하는 경우 그 사실 5. 특정한 금융기관등과 협력하여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제4-5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- ② 영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"란 제7-26조제4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
제4-65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기준지표를"을 "영 제88조제1항제1호의 기준지표 등을"로 하며, 같은 조 "제1항의 기준지표를"을 "성과보수 상한, 성과보수 지급시기, 영 제88조제1항제1호의 기준지표 등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.

- ③ 영 제88조제1항제3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"라 함은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.
- 제4-6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-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 받는다.
 - 1.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(이하 "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: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연 2회 이내에서

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시기
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(법 제234조에 따른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: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 하는 시점에 지급

제4-73조의2를 제4-73조의3으로 하고, 제4-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제4-73조의2(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확인 절차) 영 제99조제1항 제1호의2바목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"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말한다.

제6-1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"외국인 명목계좌"란 대표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 자가 투자자집단의 주식을 일괄 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대표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.

제6-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외국인이 외국인 통합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 통합계좌 내의 최종투자자 매매내역을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 및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-10조제4항 중 "신고하여야 한다."를 "신고하여야 하며, 외국인 통합 계좌명의로 투자등록을 할 때에는 통합계좌 내의 최종 투자자 목록과 그 투자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6-12조제1항 중 "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부기하여야 한다,"를 "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, 제4조의 경우에는 다수투자자의 주문을 일괄매매 및 일괄결제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좌임을 부기하여야 한다."로한다.

제6-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6-25조제2항 중 "투자등록의 취소 등"을 "투자등록의 취소, 외국인 증 권거래계좌의 이용정지 및 폐쇄조치 등"으로 한다.

별표3제1호가목(5)(다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(5)에 (라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(다)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. 다만, 독립투자자문업을 영위하던 금융투자업자가 독립투자자문업을 자진 폐지하면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(라)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

제7-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-31조의3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) 영 제252조제1항 각

호 외의 부분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"란 제7-26조제4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를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-9조(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	제2-9조(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
준) ①·② (생 략)	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영 제21조제8항제3호에서 "금
	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
	건"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
	한다.
	1.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
	나에 해당하는 금융업(투자
	일임업을 제외한다)을 겸영
	하지 아니할 것
	2.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
	기관(투자자문업자 및 투자
	일임업자는 제외하며, 보험업
	법 제2조에 따른 보험대리점
	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 및
	제4-7조의3에서 "금융기관
	등"이라한다)의 계열회사가
	아닐 것
	3.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	가. 다른 금융기관등의 임직
	원 직위를 겸직하는 자
	나.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
	터 파견 받은 자
	4.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문

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 등(임직원을 포함한다)으로 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지 아 니할 것. 다만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금융기관등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 하는 경우

나. 그 밖에 경미한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 려운 경우

5.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등이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한 정하여 자문하지 않을 것. 다 만, 특정 금융회사가 판매하 는 금융투자상품이 수수료. 보수 등의 측면에서 투자자 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6. 그 밖에 투자자와의 이해상 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요건

④ (현행 제③항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(생 략)

제4-4조(업무위탁의 보고 등) ① ⋅ 제4-4조(업무위탁의 보고 등) ① ⋅ ② (생 략)

3	영 제46조	제1항 2	각 호 외	의 부
분	단서에서	"금융위	원회가	정하
여	고시하는	경우"린	나 다음	각 호
의	어느 하나	에 해당	하는 경	병우를
말:	한다.			

1. ~ 4. (생 략)

<신 설>

4)	(생	랻`
ヘエノ	\ 0	

- 제4-6조(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> 의 차단) ① 영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영 제50조제1항제1호를 적용 1. ------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(생 략)

나.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

(3)	 	 	 	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(자 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 업 · 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 매업 · 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 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 자업자를 말한다. 이하 "자산운 용회사"라 한다)간 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
- ④ (현행과 같음)

세4-6조(금융투자업자의	정보교투
의 차단) ①	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자산운용회사: ------

4. • 5. (생략) ⑦ ~ ⑨ (생 략) <신 설>

한 투자매매업 • 투자중개업
이외의 투자매매업・투자중
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히
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
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
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힙
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마
업·투자중개업 간의 경우

- 2. ~ 4. (생 략)
- ② ~ ⑤ (생 략)
- ⑥ 영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- 1.•2. (생 략)
- 3.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(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)의 승인을 미리 받 을 것
- 4.·5. (현행과 같음) ⑦ ~ ⑨ (현행과 같음)
- 제4-7조의3(투자자문업자의 설명 의무) 영 제53조제1항5호바목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.

(2)	\sim	(5)	(연맹파	(任合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3.	

----- 이에 준하 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-7조에서 같다)-----

<u>1. 투자자문업</u>	자가	다른	금융	-업
을 겸영하는	경우	겸영	하는	금
<u>용업</u>				

- 2. 임직원이 다른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을 격직 중이거나,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일 경우 그 사실
- 3. 다른 금융기관등의 계열회사 인 경우 그 사실
- 4. 전체 투자자문 내역 중 특정한 금융기관등이 취급하는 금융투 자상품 또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비중이 30%를 초과하는 경우 그 사실
- 5. 특정한 금융기관등과 협력하 여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

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)

(생 략)

1. ~ 3. (생 략)

< 신 설 >

- 제4-52조(삿잣지수집한투자기구의 제4-52조(삿잣지수집한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)
 - ① (현행 각 호 외 부분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
 - ② 영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"란 제7-2 6조제4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 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하다.

제4-65조(성과보수의 제한) ① 영 제4-65조(성과보수의 제한) ① <삭

제88조제1항제1호에서 "금융위 제>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표를 말한

- 1.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 수를 사용할 것
- 2.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공정 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
- 3.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
-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기준 ② ----- 성과보수 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한 성과보수 지급시기 영제 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(법 제 237조제1항후단의 결의를 말한 다)를 거쳐야 한다.
- 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 1. <삭 제> 써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

88조제1항제1호의 기준지표 등

③ 영 제88조제1항제3호에서 "금 ③ 영 제88조제1항제3호에서 "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 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 우를 말한다.

게 되는 경우

- 2. 집합투자규약에서 일정 기간 2. <삭 제> 별로 구분하여 성과보수를 지 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 별 기간 종료시점의 기준가격 이 이전의 개별 기간의 종료시 점의 기준가격 중 가장 높은 수 준을 하회하는 경우(성과보수 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하회하 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이 경우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 어 기 지급된 분배금은 이를 포 함한다.
- ④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6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 경우 그 지급시기는 회계결산 시점에서 매년 1회만 지급해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 기구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 받는다.

- 1. 법 제230조에 따른 화매금지 형집합투자기구(이하 "화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"라 한 다):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서 연 2회 이내에서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하는 시기
-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(법 제234조에

(5) 영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"금 (5) <삭 제> 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 소투자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증권시장 을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 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1. 투자자가 법인, 그 밖의 단 체(「국가재정법」 별표 2에 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 및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에는 10억워
- 2.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5 억원

⑥ • ⑦ (생 략)

<신 설>

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는 제외한다): 투자자가 집합 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지급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4-73조의2(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에 대한 확인 절차) 영 제99조제1 항제1호의2바목에서 "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"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말한다.

|제4-73조의2(관계인수인과 거래)|제4-73조의3(관계인수인과 거래)|

 (생 략) 제6-1조(용어의 정의) 이 편에서	(현행 제4-73조의2와 같음) 제6-1조(용어의 정의)
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	
호와 같다.	
및 모두 됩다. 1.∼11. (생 략)	 1.~11. (현행과 같음)
- 1. 11. (% 박) - <신 설>	12. "외국인 통합계좌"란 계좌개
	설일 당시 외국법령에 따라 투
	자매매업·투자중개업 또는 집
	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
	인가받은 외국법인이 본인의
	명의로 투자자집단의 주식을
	일괄 주문 및 일괄 결제의 방법
	<u>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</u>
	<u>실질 계좌를 말한다.</u>
제6-7조(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)	제6-7조(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생 략)
<u><신 설></u>	⑦ 외국인이 외국인 통합계좌로
	주식을 매매한 경우 통합계좌 내
	의 최종 투자자 매매내역을 상임
	대리인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
	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금
	응감독원장 및 거래소에 보고하
	<u>도록 하여야 한다.</u>
제6-10조(투자등록신청 등) ① ~	제6-10조(투자등록신청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한 외	4
 국인이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경	
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	

용을 하는 자는 이를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. 고하여야 하며,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자로 투자등록 할 때에는 통합계좌 내의 최종 투자자 목 록과 그 투자등록 정보 등을 금 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 제6-12조(투자등록의 특례) ① 제6 제6-12조(투자등록의 특례) ① ----10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투자등록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 산을 구분하기 위한 것임을, 제3 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 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부기 ----- 것임을, 제4 하여야 한다. 호의 경우에는 다수투자자의 주 문을 일괄매매 및 일괄결제의 방 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좌임을 부기하여야 한다. 1.~3. (생략) 1.~3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4.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-25조(위반시의 조치) ① (생 제6-25조(위반시의 조치) ① (현행 과 같음) 럌)

② 금융위원회는 이 장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 ------다.

< 신 설 >

로 하여금 투자등록의 취소 등 ----- 투자등록의 취소, 외국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 인 통합계좌의 이용정지 및 폐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.

> 제7-31조의3(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의 운용특례) 영 제252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"란 제7-26조 제4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 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 한다.